

제316회 정례회

2012. 11. 26(월)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홍열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12년 11월 2일

나. 회부일자 : 2012년 11월 7일

3. 제안이유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업소별 간판 총수량 규정 (안 제2조)

나. 가로형 간판에서 물가안정 등의 표시는 예외 설치 허용 (안 제5조)

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대상 추가 (안 제11조)

라. 시공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표시기준 신설 (안 제12조)

마. 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등의 기준 신설 (안 제19조)

바.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공연간판 추가 (안 제29조)

사.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 입법예고('12. 8. 17. ~ 9. 17.)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
- 조문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가.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간결하게 제출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다만, '99년부터 시행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내년도 사업비 미확보에 따른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